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함(안 제3조).
- 나.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성인문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6월 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성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315호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9일

발의의원 : 이성혁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함(안 제3조).
- 나.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성인문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수료증) 시장은 시민등의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취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